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⑤

이용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1. LP가스판매시설의 용기저장실 출입문과 주차장 위치 여부

Q 부득이하게 LP가스시설의 용기저장실 출입문과 주차장의 위치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제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은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10㎡이상)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골목길에 용기운반자동차

를 주차하여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구조는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명의 대표허가자와 9명의 동업자의 경우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위법 여부

Q 허가상 1명의 대표자만 있고 9명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의 명의로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제로 개별 영업을 할 경우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9명은 무허가 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어 판매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는 판매사업자가 판매업소 안전관리, 공급자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반 법규정을 책임지고 준수하도록 하여 가스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판매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제1호차목에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운반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스전용운반자동차는 판매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다. 또한, 판매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제로 판매사업을 하는 것은 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에서 현장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3. LPG가스용기 보관실 확장에 대하여

Q LPG가스용기 보관실을 12㎡이상 확장 시 가. 기존용기보관실 면적을 증설할 경우 철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와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기초 앵커의 설치 방법(기존용기보관실은 앵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나. 기존방호벽과 신규방호벽의 연결방법(철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와 콘크리트로 설치할 경우, 기존철판 방호벽에 신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다. 기존용기보관실은 무거운 재질이고 증설하는 용기보관실 위까지 무거운 지붕으로 연결될 경

우 증설하는 용기보관실 지붕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설되는 용기보관실의 지붕은 신 규모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는지?

라. 증설되는 용기보관실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데 “건축물 내부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음”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A 가. 기존건축물 내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의2의 규정에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제2장제2절제1관의 규정에 의한 방호벽의 종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연결방법은 동 종류의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의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용기보관실을 확장 시 LPG가스용기보관실의 지붕재질 및 기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LPG충전소 허가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이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못한 충전시설에 대한 검사기준

Q 가. LPG충전소 허가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48m)이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될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완성·정기검사기준은?

나. 충전소에 대한 완성·정기검사 시 시·군에서 정한 고시 조례 등에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적용은 허가 시에만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검사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A 가.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관한 완성·정기검사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라)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시·도지사가 정한 고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할 경우 동 안전거리는 「허가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여부

Q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시설의 경우 용기보관실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사용시설의 용기보관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면 될 것이며,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은 동법 별표18제1호제마목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4제3호제나목 규정의 검사항목 중 동법 별표3제1호가목제(12)(나)의 규정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사용시설에 설치된 용기보관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골프장이 자체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매설배관은?

Q 골프장의 자체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매설배관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m를 적용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처럼 0.6m를 적용해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8제5호제차목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제1호제다목(2)(라)③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내의 매설깊이는 1m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7. 가스계량기의 격납상자 규정 사항

Q 가스계량기의 격납상자의 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는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설치하는 격납상자의 경우 재질 및 규격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면 플라스틱 격납상자도 설치 가능할 것이다.☺